

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제12조 [계약의 목적]

기관과 대상자(또는 보호자)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,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3조(사업의 목적)에서 명시한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그 계약의 목적이 있다.

제13조 [이용계약]

1.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때 대상자의 가족(보호자)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 계약할 수 있다.

2. 기관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.

①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 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.

단, 대상자(또는 보호자)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.

②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 요양 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(별지1)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 약관(이하 '계약서'라 한다.)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(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은 과정을 따른다).

- 계약당사자, 계약기간, 목적, 급여범위, 급여이용 및 제공, 계약자 의무, 계약해지 요건, 계약의 해지, 이용료 납부, 재계약, 건강관리, 위급 시 조치, 개인정보 보호의무, 기록 및 공개, 배상책임등 수급자의 이용에 관한 내용 설명

제14조 [계약기간]

1.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.

1. 기관과 대상자는 등급의 변경, 계약기간 종료시,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.

제15조 [기관의 기본 책무]

1.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.
2.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,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(또는 보호자)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.
1.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,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때 대상자(또는 보호자)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16조 [대상자의 책임 이행]

1. 대상자 또는 그 가족(보호자)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.
2.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3. 급여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
1. 대상자 또는 그 가족(보호자)은 분실, 파손, 부상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,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.
2.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·군·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.
3.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.

제17조 [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]

대상자는 제13조(이용계약)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(보호자)을 지정할 수 있으며,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(보호자)은 신원 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진다.

1. 신원 인수인의 권리
 -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 -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
 - ③ 기관이 시행하는 만족도 조사,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, 시정을

요구할 수 있는 권리

2. 신원 인수인의 의무

- ① 대상자로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
-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 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
- ③ 대상자의 인적 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
- ④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때 대리인 선정 의무
- ⑤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 의무
- ⑥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.

제18조 [계약 해지]

- 1. 계약 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.
- 2.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 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.
 - ①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할 경우
 - ②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
 - ③ 계약기간 중이라도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단,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.
 - ④ 대상자가 사망한 때
 - ⑤ 대상자가 1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
 - ⑥ 대상자 계약서 상의 규정을 위반한 때
 - ⑦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,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
 - ⑧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 손해를 가한 때
 - 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, 해제 사유가 발생한 때
 - ⑩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였을 때
 - ⑪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

- ⑫ 불안 또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
- ⑬ 폭행, 욕설,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,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
- ⑭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

제19조 [절차 및 기한]

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.

1.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때는 수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2.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는 자동 계약 해지 된다.
3.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준다. (연 2회)
4. 본 조항에 따라 계약 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는 신규 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